

201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주요 진행 사항

201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(안)은 지난 제70차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인준을 받아 교섭위원과 함께 사측에 통보한 상태이며, 추후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□ 경과 내용

관련(일자)	내 용
영광법 제523호 (2018.01.22.)	2018학년도 단체교섭 대표권 및 협약 체결권 위임 통보 - 수임인: 대구대학교 총장
총무팀-3019 (2018.01.29)	2018학년도 단체협약(임금협약 포함) 대학(안) 및 교섭위원 통지 - 사측 교섭위원 명단 및 단협(안) 통지(총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행복처장, 기획부처장, 사무부처장, 총무팀장, 예산재정팀장 / 단협안은 아래 참조)
임시총회 (2018.02.06.)	제70차 임시총회 - 201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대학 측 주요사항 논의 및 협약위원들에게 협약 권한을 위임해줄 것을 요청 및 승인
노동조합-14 (2018.03.22)	2018학년도 임금·단체협약(안) 및 교섭위원 통지 -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부장, 대의원 의장, 대의원(서영화) + 추가 구성 후 추후 통보

□ 단체협약(안) 주요 내용

- 하단 참조

2018학년도 대구대학교 단체협약(급여에 관한 협약 포함)(안) 요약본

2017학년도 단체협약서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노동조합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복 무 (연장·근로시간·휴일·휴가)</p> <p>제32조(근무시간)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은 09:00부터 17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3:00까지로 하되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.</p> <p>③ 휴게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④ 동·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노사협의 회에서 정한다.</p> <p>제36조(유급휴가)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복 무 (연장·근로시간·휴일·휴가)</p> <p>제33조(근무시간)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은 09:00부터 17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3:00까지로 하되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.</p> <p>③ 휴게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④ 동·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노사협의 회에서 정한다.</p> <p>제36조(유급휴가)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복 무 (연장·근로시간·휴일·휴가)</p> <p>제32조(근무시간) ① <u>조합원의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하며,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② 휴게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③ 동·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노사협의 회에서 정한다.</p> <p>제36조(유급휴가) ① (삭제)</p>	<p>근무시간변경</p> <p>항삭제</p> <p>항번호변경</p> <p>항번호변경</p> <p>연가보상비 폐지</p>

2017학년도 단체협약서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노동조합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비고
<p>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급 여</p> <p><u>제42조(급여의 협약)</u> 조합원의 급여는 2017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.</p>	<p>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급 여</p> <p><u>제42조(급여의 협약)</u> 조합원의 급여는 2018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.</p>	<p>대학은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가를 부여하고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급 여</p> <p><u>제42조(급여의 협약)</u> 조합원의 급여는 2018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.</p>	<p>자구수정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</p> <p><u>제46조(퇴직·근속휴가)</u> ①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다.</p> <p>②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6개월에 대하여 퇴직·근속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④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 사용 전 미사용 연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</p> <p><u>제46조(퇴직·근속휴가)</u> ①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다.</p> <p>②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6개월에 대하여 퇴직·근속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④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 사용 전 미사용 연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</p> <p><u>제46조(퇴직·근속휴가)</u> ①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다.</p> <p>②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개월에 대하여 퇴직·근속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④ 제2항의 퇴직·근속휴가 사용 전 미사용 연가</p>	<p>자구수정</p>

2017학년도 단체협약서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노동조합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(안) (총82개조 + 부칙 4개 조항)	비고
<p>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, 제36조에 따른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은 퇴직·근속휴가 사용과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⑤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·근속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</p>	<p>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, 제36조에 따른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은 퇴직·근속휴가 사용과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⑤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·근속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</p>	<p>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, 제36조에 따른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은 퇴직·근속휴가 사용과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⑤ 대학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·근속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</p>	
<p><u>제51조(퇴직보전금)</u>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,000원을 매월 지원한다.</p> <p><u>제53조(맞춤형복지제도)</u>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(어학강습, 문화생활, 취미활동 등)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,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<u>제51조(퇴직보전금)</u>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,000원을 매월 지원한다.</p> <p><u>제53조(맞춤형복지제도)</u>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(어학강습, 문화생활, 취미활동 등)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,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51조(퇴직보전금) 삭제</p> <p>제53조(맞춤형복지제도) 삭제</p>	<p>조삭제</p> <p>조삭제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유효기간)</u>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유효기간)</u>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유효기간)</u>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.</p>	<p>자구 수정</p>

	2018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 노동조합(안)	2018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 대학(안)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	<p>1. 2.6% 인상(단, 자연 호봉승급분 제외) ※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 반영</p> <p>2. 가족수당 인상(2017. 1. 6.자 공무원 변경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1 568 1207 979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부양가족</th> <th colspan="2">월지급액</th> </tr> <tr> <th>현행</th> <th>변경(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배우자</td> <td>40,000원</td> <td>동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</td> <td>20,000원</td> <td>동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자녀</td> <td>첫째자녀</td> <td>20,000원</td> <td>동일</td> </tr> <tr> <td>둘째자녀</td> <td>20,000원</td> <td>60,000원</td> </tr> <tr> <td>셋째 이후 자녀</td> <td>20,000원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양가족		월지급액		현행	변경(안)	배우자		40,000원	동일	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		20,000원	동일	자녀	첫째자녀	20,000원	동일	둘째자녀	20,000원	60,000원	셋째 이후 자녀	20,000원	100,000원	<p>1. 급여인상률: 동결(단, 자연 호봉승급분 반영)</p>
부양가족				월지급액																						
		현행	변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
배우자		40,000원	동일																							
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		20,000원	동일																							
자녀	첫째자녀	20,000원	동일																							
	둘째자녀	20,000원	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
	셋째 이후 자녀	20,000원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
보수 관련 기타	<p>성과급 현행 유지</p> <p>교직원 보수규정 개정</p>	<p>성과급 예산 20% 감액</p> <p>교직원 보수규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산호봉 폐지(40호봉 이상) • 초임호봉 책정 기준 변경 - 대상: 신규 채용 교직원(일반직, 기술직) 																								